

판 결

사 건
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, 근로기준법위반

피 고 인

검 사

변 호 인

변호사 조효동(국선)

판 결 선 고

주 문

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
노역장에 유치한다.

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.